
학생생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일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배우며, 학습과 생활 전반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 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 규칙(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④ 이 규칙(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립·운영되어야 하며,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며, 그 적용에 있어 일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 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 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비행 이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8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신 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과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⑦ 샤워실 이용 수칙을 바탕으로 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샤워실 이용 수칙>

- 샤워실 출입 시 먼저 담당 교사에게 알린다.
- 샤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다.
- 빨래, 때밀이, 자리 독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
-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오일, 팩, 염색약 등의 사용을 금한다.
- 비누칠할 때는 반드시 물을 잠그고 사용한다.

-샤워실은 오직 씻기 위한 목적이므로 물장난이나 장시간 사용을 금한다.

-전염성 질병 환자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의 출입은 금한다.

-모든 음식물, 음료수의 반입은 금한다.

⑧ 학교시설, 비품, 교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시는 즉시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파손한 학생은 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과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휴식 시간)

- ①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 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과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 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기타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건

제15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교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별표2]

1. 등·하교 시 반드시 교복 및 생활복(체육복) 등 학교가 인정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2. 교복을 임의로 변형(상, 하의 길이 및 품 등)하여 입는 것을 금한다.
3. 착용 시기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외투(겉옷)를 착용할 수 있다.
4. 여학생 교복 착용 시 바지와 치마 선택권을 보장한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등교와 함께 반별 수거함에 제출하고 종례 시 돌려 받는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종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시험 기간 중 제①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⑤ 교내의 모든 스마트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8조(학내 표현과 집회)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직원들은 게시물의 내용이 차별·혐오 표현 및 폭력적인 표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는 게시판 운영 규정에 따라 직접 수거 또는 철거 등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표현행위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그 내용이 타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⑦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9조(학생회)

① 학생회 임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학생회장·부회장 선거는 1학기 후반(6월경)에 실시한다.
2. 임기는 당해 연도 2학기부터 다음 연도 1학기이다.
3.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는 2인 1조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 형식으로 등록한다. (회장 후보 2학년, 부회장 후보 1학년)
4.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입후보 공고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제한이 회복된다.
5. 회장, 부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참가하여 직접·비밀 선거로 투표로 당선된다.
6. 회장 후보 중 2등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회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③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 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활동 등의 실행
3.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4. 학교 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④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운영한다. 부서원은 학교장이 학생회 임원으로 임명한다.

1. 홍보여론부 : 학교의 홍보, 학내 행사 홍보,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부 : 학술·예술에 관한 창작 활동 또는 교양·취미·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행복나눔부 :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5. 생활봉사부 : 교내 행사 지원
6. 서기 : 학생 회의록 관리 및 일지 관리

제20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해로운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 사안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이며, 회의에 참여한 참석자 전원은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비밀 유지 차원에서 생활교육위원회 내 촬영 및 녹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3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제24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4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 지도 및 분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별표1]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 지도 및 분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별표2]

1. 제25조 제2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 24조에 따른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 및 수거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4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4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4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⑧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물품을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한 물품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반환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간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 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받는다.
- ③ 제3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0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연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 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1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 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징계는 병과할 수 없으며, 한 건의 사안에 대해 제1호~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만 부여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 보조, 학교 인성 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 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

하지 않는다.

5. 퇴학 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심의를 거쳐 퇴학 처분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 판단 기준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누적 출석 1/3 일 이상 미인정 결석의 경우, 그 밖의 학생 생활 규칙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이다.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는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 등)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전화(SNS 문자 포함)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와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6조(퇴학 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 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7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인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징계 항목이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⑤ 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가중 처벌(퇴학 등)할 수 있다.

제38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따라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8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 입소를 포함한 형사처벌 또는 그 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자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는	○	○	○	○	○

	행위를 한 자					
9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	○	○	○	○	
10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무단 외출	○	○	○	○	
11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12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13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1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15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16	금품이나 물품을 갈취, 사취하는 행위(절도)	○	○	○	○	○
17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18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19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20	타인의 신상정보 불법 거래, 개인 정보 도용 및 침해	○	○	○	○	
21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22	몸에 문신이나 상처를 내어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행위	○	○	○	○	
23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으로 등하교 하는 행위	○	○	○	○	
24	무면허 운전, 학생 간 차량 렌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	○	○	
25	품행이 불량하여 징계에도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	○	○	○
26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이 지속적인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	○	○	○	○	○
2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	○

제5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0조(학업 중단 예방위원회)

- ①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41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 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6장 규칙의 개정

제42조(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 생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제·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 조사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생활 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회 임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44조(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 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5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6조(연수 및 교육) 학교는 개정된 학생 생활 규칙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생 생활 규칙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5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 수업 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 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 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 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진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또는 뒷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 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u>학교 지정 장소</u> (수업 종료 시 까지) · wee클래스 (1) · 해당 학년부실 (2) · 보건실 (3) 등	·교사가 학생부 소속 교사에게 학생 인 계 요청 ·학생부 교사 부재 시 다음 순위자 지정 (교무실 수업이 없는 교사)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 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u>학교 지정장소</u>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방과후 시간 50분 이내) · 해당 교실 등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 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교육위원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u>학교 지정 장소(60분 이내)</u> · wee클래스 (1) · 해당 학년부실 (2) · 보건실 (3) 등	·교사가 학생에게 요청 후, 교직원이 인 계하여 학생을 지정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안 발생 시, 본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관련 교직원이 분담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별표 2 [제25조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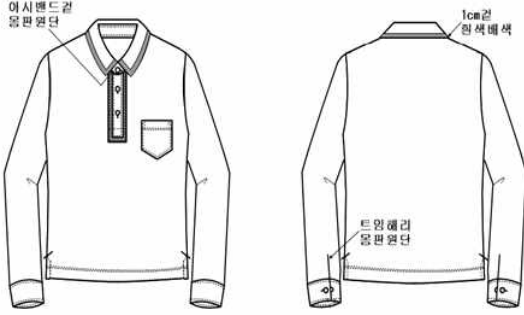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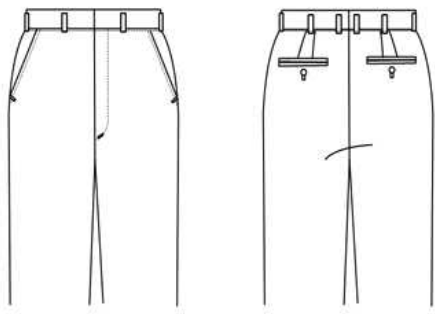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규칙 제25조 제9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u>교실 지정 장소</u>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단, 휴대전화의 경우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소지하고 있을 경우 발견 즉시 분리보관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부모의 반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u>학교 지정장소</u> 교무실 학생생활안전부 캐비닛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담임, 교과교사) · 학년부 생활지도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물품보관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 반환하고,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별표 2 교복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일고등학교 학생 교복의 디자인 사양과 착용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 사양】 아래에 제시된 광일고등학교 학생 교복 디자인 사양에 대한 권리는 모두 학교가 가진다.

① 교복(춘추복) 사양서

분류	디자인 스케치	색상 옷감	디자인 및 부자재
상의		○ 색상 * 감색 * 배색1 : 흰색 ○ 옷감 * 폴리에스터100%	○ 디자인 * 각 Y카라 * 카라 끝 1cm겉배색 * 우아단작 0.5cm, 시다단작 0.5cm - 흰색배색 ○ 부자재 * 단추 11mm
하의		○ 색상 * 회색 ○ 옷감 * 스판 (폴리에스터60%, 레이온35%, 폴리우레탄5%)	○ 디자인 * 기본 신사형 바지
사진			

② 교복(하복) 사양서

분류	디자인 스케치	색상 옷감	디자인 및 부자재
상의		○ 색상 * 감색 * 배색1 : 흰색 ○ 옷감 * 겉감 : 생활복 기능성 (폴리에스터100%)	○ 디자인 * 각 Y카라 * 카라 끝 1cm ○ 겉배색 * 우아단작 0.5cm, 시다단작 0.5cm * 소매끝 0.3cm * 흰색파이핑배색 * 소매끝 비조장식 ○ 부자재 * 단추 11mm
하의		○ 색상 * 회색 ○ 옷감 * 겉감:폴리사방스판 (폴리에스터95%,폴리우레탄5%)	○ 디자인 * 기본 신사형 바지
사진			

제3조 【착용 방법】

-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일고등학교 학생은 교내에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 ② 학생들은 학교장이 지정한 기간 동안 학교장이 제시한 교복 착용 방법에 따라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별표 3 체육복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일고등학교 학생 체육복의 디자인 사양과 착용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 사양】 아래에 제시된 광일고등학교 학생 체육복 디자인 사양에 대한 권리는 모두 학교가 가진다.

① 체육복 동복

구분	디자인 및 소재	사진
상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팔 라인 : 어깨 2선(흰색, 노란색, 연두색) 2. 소재 : 스판메모리(폴리에스테르 93.3%,폴리우레탄 6.7%) 3. 세부사항 1) 올지퍼 사파리 스타일 2) 왼쪽 하단에 학생 명찰 부착 3) 양쪽 모두 주머니 4) 손목 시보리 4. 사이즈 S, M, L, XL, XXL, 3XL, 4XL - 7가지 사이즈 그 이상 및 특이 사이즈는 키, 몸무게 제작	
하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옆선 : 2선(흰색, 노란색, 연두색) 2. 소재 : 스판메모리(폴리에스테르 93.3%,폴리우레탄 6.7%) 3. 세부사항 1) 허리 고무줄 밴드 2) 왼쪽 하의(주머니 하단) 학생 명찰 부착 3) 일자형 옆주머니 4. 사이즈 S, M, L, XL, XXL, 3XL, 4XL - 7가지 사이즈 그 이상 및 특이 사이즈는 키, 몸무게 제작	

② 체육복 하복

구분	디자인 및 소재	사진
상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팔 라인 : 어깨 2선(흰색, 노란색, 연두색) 2. 소재 : ATB100%(폴리에스터 100% 쿨론) 3. 세부사항 1) 올지퍼 사파리 스타일 2) 왼쪽 하단에 학생 명찰 부착 3) 양쪽 모두 주머니 4) 손목 시보리 4. 사이즈 S, M, L, XL, XXL, 3XL, 4XL - 7가지 사이즈 그 이상 및 특이 사이즈는 키, 몸무게 제작	
하의	1. 디자인 1) 바탕 : 짙은 남색 2) 옆선 : 2선(흰색, 노란색, 연두색) 2. 소재 : 스판메모리(폴리에스테르 93.3%,폴리우레탄 6.7%) 3. 세부사항 1) 반바지형 2) 허리 고무줄 밴드 3) 왼쪽 하의(주머니 하단) 학생 명찰 부착 4) 옆주머니 4. 사이즈 S, M, L, XL, XXL, 3XL, 4XL - 7가지 사이즈 그 이상 및 특이 사이즈는 키, 몸무게 제작	

제3조 【착용 방법】

- ① 학생들은 체육활동 시간에 학교장이 지정한 체육복을 착용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교육활동 중에 체육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